

협력사 행동 규범

국도화학주식회사

제1장 규범의 개요

1. 목적

- 국도화학주식회사(이하 “국도”)는 우리 사회, 환경, 경제 등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합니다. 이를 위해 국도화학 ESG 경영방침을 수립하여 준수하고 있으며, 지속가능성이라는 일관성 있는 원칙을 지키는 공급사와 상호 협력하고자 합니다.

2. 적용 대상

- 본 규범은 국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기타 모든 방식의 거래를 하는 전 협력사(이하 “협력사”)에 적용됩니다. 또한 국도와 관련한 공급망 전반에 걸쳐 본 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본 규범의 적용 대상인 협력사는 자신의 거래 업체(이하 “하위 협력사”)가 본 규범을 준수할 것을 권장하기 바랍니다.
- 협력사는 본 규범의 내용을 이해하고 본 규범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며, 만약 본 규범에 명시된 기준이 협력사의 현지 법률과 다를 경우 해당 법률의 틀 안에서 이러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
3. 공시

- 협력사는 본 규범과 관련된 정보를 국내 또는/및 국제기준에 따라 공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, 공시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이를 공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.

4. 점검

- 협력사는 본 규범의 준수 여부 및 이행상황에 대해, 국도가 요청하는 필요한 정보를

제공하거나 현장 실사를 허용하여야 합니다. 협력사가 본 규범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위반하거나 또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권고나 제안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, 국도는 거래관계의 단절을 포함한 일체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제2장 비즈니스 윤리

1. 윤리 경영

- 협력사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윤리적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합니다.

2. 반부패

- 협력사는 부정부패, 뇌물 수수, 사기, 부당 이득 등에 관여하지 않으며 이를 용인하지 않습니다.

3. 공정 거래

- 협력사는 불공정 거래에 가담하지 않으며 공정한 시장 질서와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4. 지식재산권

- 협력사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.

5. 수출 제한 준수

- 협력사는 수출 제한과 관련한 국가별 법률과 국제 규약을 준수하며 수출 제한 및 정당한 경제 제재에 해당하는 국가, 지역, 개인과 거래하지 않습니다.

6. 분쟁 광물

- 협력사는 반윤리적 방식으로 채굴된 분쟁 광물을 취급하지 않으며, 관련한 국가별 법률과 국제 규약을 준수합니다.

제3장 인권 경영

1.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

- 협력사는 임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노동을 금지합니다.
- 협력사는 자신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의 법률이 정한 최저 고용 연령 기준을 준수합니다.

2. 차별 금지

- 협력사는 성별, 인종, 국적, 종교, 장애 여부, 연령, 신분, 사상 등을 이유로 고용 및 회사 내 처우 등에 있어 차별하지 않습니다.

3. 근로 시간 준수

- 협력사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근로 시간을 준수하고, 만약 초과 근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합니다.

4. 결사의 자유

- 협력사는 단체 교섭권을 포함하여 임직원의 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.

제4장 환경 보호

1. 법률 준수

-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별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,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환경 인허가를 취득 및 유지해야 합니다.

2. 환경 보호

- 협력사는 온실가스, 오염 물질, 폐기물 등의 배출 저감, 에너지 및 물 등의 사용 절감을 포함하여 사업의 운영과 관련한 환경적 영향을 측정, 관리, 최소화할 책임이 있습니다.

제5장 안전 보건

1. 근로자 안전

- 협력사는 사업장 내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조건을 보장하며 안전 사고를 관리하기

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,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여야 합니다.

2. 공정 안전

· 협력사는 연구, 제조, 운송과 같은 모든 공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진단 및 통제해야 하며, 위험 및 사고의 발생은 시의 적절하게 보고 및 관리하여야 합니다.

3. 제품 안전

· 협력사는 제품 안전 규정을 준수하여 국도에 제공되는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유해 물질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.

제6장 경영 시스템

1. 지속가능성

· 국도는 지속가능성을 사업의 핵심적 사업 가치로 여기며, 이에 따라 협력사가 본 규범의 목적 및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스스로 준수하고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.

2. 고충 처리

· 협력사는 본 규범과 관련한 위반 사실을 신고 및 처리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보복을 금지해야 합니다.

3. 하위 협력사 관리

·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가 본 규범 내의 윤리, 인권, 환경, 안전 분야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며 위반하게 되는 경우 하위 협력사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.

2023년 8월 31일

국도화학주식회사

대표이사 회장 이 시 창